

『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산간, 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, 상위 법령인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,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」은

- 비지정 관광지 입장객에게 징수하던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으로 징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